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8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서천호·김선교·우재준

김예지 · 정희용 · 이양수

정성국 • 서명옥 • 진종오

이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, 운송업체가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적용한다"를 "적용하며, 제5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
례)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9) ①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	
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	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	
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	
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	
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	
해서만 <u>적용한다</u> .	<u>적용하며,</u> 제5호의2는
	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
	<u>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</u> 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
	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
	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을
	위하여 공급하는 것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